#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0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 박홍근・이수진・박상혁

조정식 • 권칠승 • 한정애

김민석 • 염태영 • 진성준

한민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31년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음.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가 이 뤄졌으나, 보완해야 하는 점도 있음. 반려동물 가정이 늘고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 밖에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보호, 동물도살의 고통 최소화, 등록 대상동물 등록의 갱신제도 도입 등 동물의 보호·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에 있어 현행법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동물이 생존하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법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명도 이에 맞게 바꾸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동물의 복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명을 「동물보호 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함.
- 나.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고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 및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 신설 등).

- 마. 시·도지사는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 바.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 사.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 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 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7조제7항 신설 등).
- 아.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 호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동물학대범죄"란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재난 시 소유자등의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행위"를 "행위(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위"를 "행위(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위"를 "행위(동물의 처리에 대한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를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거세"를 "누구든지 미용을 목적으로 거세"로, "동물에 대

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를 "외과적 수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 목적으로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 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변경신고"를 "갱신 절차, 변경신고"로한다.

제3장에 제1절의2(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 제16조의2(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 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의3(청구사건의 관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물사육금지명령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 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 적용 법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

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의5(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1.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
  - 2.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
  -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동물 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 고하는 때
  - ③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④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하여 독립 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 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의7(집행지휘) 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① 피명령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대상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동물사육금지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 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 터 집행한다.
  - 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 제16조의9(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치게"를 "중상해를 입게"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하여야 한다.

1의2.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힌 경우

제34조의 제목 중 "보호"를 "보호·긴급격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를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격리하는 조치(이하 "긴급격리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적극행정 면책)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34조의3(긴급격리조치 후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 찰관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 치를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긴급격리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4조의4(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4조의5(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① 법원은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게 피학대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이하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원은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시동물 사육금지조치는 해제된다.

제37조제6항 중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제7호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6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 2.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제7호
- ⑦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 신고를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6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무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동물보호전문가의 자격·요건·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4항"로 한다.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한 자 4의2.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따르지 아니 한 자

제101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 소유자"를 "아니하거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를 위반하여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한 자 7의2.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동물보호법」"을 각각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⑥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동물보호법」"을"「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⑦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을 각각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⑧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동물보호법」"을"「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⑩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을 각각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동물학대범죄"란 제97조 제1항제1호 ·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범죄를 말한다.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 한 보호 · 관리를 위하여 5년마 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 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사항(재난 시 소유자등 의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u>행위</u>
-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

1
행위(사람의 생명・신체에 대
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u>행위(허가, 면허 등</u>
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제외한다)</u> 3
3
3
 3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 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 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 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 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 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 | 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 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 제14조(동물의 수술) 누구든지 미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 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 다. <단서 신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

	2	$\sim$	(5)	) (ক্	현행:	과	같.	음)			
제	13	조(	동듾	물의	도	살병	남	])	1		
					- <u>고</u>	통을	<u> </u>	최:	소호	화_	할
	<u>수</u>	있	는	방투	법에	따	라	야	한	<u>다</u>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 용을 목적으로 거세----------외과적 수 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의료 목적으로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 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 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 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② ~ ⑥ (생 략)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 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u>하며,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u>
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7)
갱신 절차, 변경
신고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u>청구 등</u> 제16 로 이 2 (도무 사 으 그 기 버 런 이
제16조의2(동물사육금지명령의
<u>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u>
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 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 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 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3(청구사건의 관할) 동물 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은 동물사육금지명령청구사건 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

<신 설>

<신 설>

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 청
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
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 자(이하 "피명령청구자"라 한 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명령 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 항
-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적용 법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 본을 피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동물 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 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 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u><신 설></u>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 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5(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동물사육 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 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 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 2.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 지되는 대상동물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 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 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 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 다) · 면소 ·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③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

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u>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u> <u>다.</u>

- ④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 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 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 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로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 대상 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명령청구자 및 「형사 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신 \_설>

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 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 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 한 같다.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이내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명령자"라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수 있다.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 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 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 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 <신 설>

<신 설>

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집행지휘) ① 동물사육 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 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① 피명령자는 동물사육 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대 상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명 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대 상이 되는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지 여부를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 조치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 ③ 동물사육금지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 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 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u>제16조의9(동물사육금지명령 집</u> <u>행의 종료) 제16조의5제1항에</u>

<신 설>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1. -----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신 설>

- 2. · 3. (생략)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u>따</u> ㄹ	<u> </u>	고된	동물	사육급	글지도	<u> 병령</u>
은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니	<u> </u>
해 <b>등</b>	강하는	때어	」ユ	집행	o) <del>2</del>	중료
<u>된디</u>	<u>}.</u>					
<u>1.</u>	동물시	나육금	기명	[령기]	간이	경
<u>과</u>	-한 띠	}				

-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 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 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1)	 	 	 	

-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철회하여야 한다.
- 를 입게----
- 1의2.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 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힌 경우
- 2. · 3.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1호 및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 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 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 ·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호의2
제34조(동물의 구조· <u>보호·긴급</u>
<u>격리</u> ) ①
<u>시</u>
<u>・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u>
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학대행
위자로부터 긴급하게 격리하는
조치(이하 "긴급격리조치"라 한
<u>다)를 하여야 한다</u>
<u>.</u>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적극행정 면책)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 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 을 묻지 아니한다.

제34조의3(긴급격리조치 후 임시 동물사육금지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를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34조의4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긴급격리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 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4조의4(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제 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의5(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① 법원은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게 피학대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이하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 ⑤ (생 략)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 시설운영자가 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 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임시동물사육금지조 치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 조치 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동물 사육금지조치를 해제할 수 있 다.
-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물사 육금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 시동물사육금지조치는 해제된 다.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 │ ⑥ 다음 각 호에-----

- 1. 제6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 매업자
- 2.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 • 제7호
- ⑦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 신 고를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

# <u>⑦</u>・<u>⑧</u> (생 략)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지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86조(출입·검사 등) ① (생 <sup>전</sup>략)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	]
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히	ŀ
거나 광고를 하지 못한다.	
<u>⑧·⑨</u> (현행 제7항 및 제8형	Ļ
과 같음)	
세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은 제37조여	<u> </u>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동	: <u> </u>
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세86조(출입・검사 등) ① (현행	]
과 같음)	
2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u>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u> 실험시행기관의 장

- 4. 제5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 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
- 5.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
- 6. 제63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 지축산물의 표시를 한 자
-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한 자

③ ~ ⑦ (생 략) <신 설>

제97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③) ~ (7) (현행과 같음)
- ⑧ 공무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시설이나 사무실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전문가의 자격・요건・기간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3)	 	 	 	 	 	 	

\_\_\_\_\_

에 처한다. <신 설>

1. (생략) 2. ~ 4. (생 략) <신 설>

5. ~ 10. (생략)

- 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8. (생 략)
-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 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10. ~ 12. (생략)

⑥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 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따르 지 아니한 자

- 5. ~ 10.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1. ~ 8. (현행과 같음)
-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 9. 제46조제1항 또는 제4항----
  - 10. ~ 12.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4. ------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u>아니</u>------한 소유자거나 갱신
- 5. ~ 7. (생 략) <u><신 설></u>
- 8. ~ 26. (생략)
- ④·⑤ (생 략)

- 3의2.제14조를 위반하여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한 자
- 4. ----- 

   ----- 아니하

   거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
- 5. ~ 7. (현행과 같음)
- 7의2.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 하거나 광고를 한 자
- 8. ~ 26.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